

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(안) 심사보고서

2007년 9월 5일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8월 14일 종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7년 9월 3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7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재무건설위원회(2007. 9. 5) 상정·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기획재정국장 조 성 린)

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【배 입】

- 우리나라 역사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대기의 문화유산이 급격한 산업화·도시화에 의하여 점차 멸실·훼손되어가는 것을 막고
- 역사적 산물로서 당대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고 향후 문화재로 지정·보호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·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- 따라서 명륜1가 36-1호 전 장면총리 가옥은 한식과 일식, 서양식의 건축양식이 혼합되어 있는 매우 독특한 양식의 1930년대 근대 가옥으로

- 장면 前 총리가 직접 건립해 운명할 때까지 거주한 장소이고, 광복 이후 정치사의 중심지이기도 하므로 건축사적·정치사적 보존가치가 있어 문화재청에서 2007. 4. 30 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해 예고된 부지로서
- 우리 구에서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아 매입 근대문화 유산의 원형 보존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부지 매입을 추진함.
- 변경내용

회계구분		재 산 의 표 시					감정가액 매입가격 (천원)
		구분	소 재 지	지목	면적(m²)		
					토지	건물	
계					403.30	165.29	2,050,020 (감정가액) 1,990,000 (매입가격)
일반회계	매입	토지	명원가36-1	대지	403.30	-	2,038,681 (감정가액)
		건물		-	-	165.29	11,339 (감정가액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김 충 식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략)

5. 討 論 要 旨 (없음)

6. 少數意見의 要旨 (없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